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13호 2017. 11. 2(목)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0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3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4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4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임사무에 대한 정비

2. 주요내용

- 보건소 위임 사무에 대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보건소 위임 사무에 대한 정비

3. 주요내용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정비(별표 2)

4.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재무과	1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지방재정법 제100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 조례 제16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18조	
위생과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 명령 등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자. 시설개수명령 등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카.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타. 청문 파. 약사감시원 임명 하. 등록증 등의 갱신 거. 과징금 처분	약사법 제20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69조의4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98조	
	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계획의 세부계획수립 나.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보고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3	건강생활의 지원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	
	4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5	보건교육의 실시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	- 같은 법 제12조	
	6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조건강 실태조사 나.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7	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 같은 법 제19조	
	8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9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폐쇄등 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소)심사 청구 등 마. 정신질환자의 퇴원(소), 임시퇴원(소),	「정신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9조, 제33조, 제37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p>처우개선 명령,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 등</p> <p>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p> <p>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 발급</p> <p>아. 정신질환자 진단·치료비용 징수 및 통지</p>	<p>같은 법 시행령 제1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p> <p>같은 법 제37조의2</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22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p>	
	10	<p>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p> <p>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p> <p>다. 청문</p>	<p>「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제2호</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p> <p>같은 법 제17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p>	
	11	<p>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등록 및 변경등록</p> <p>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p> <p>다. 보고와 검사 등</p> <p>라. 시정명령</p> <p>마. 업무 개시 명령 등</p> <p>바. 폐기 명령 등</p> <p>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p> <p>아. 시설개수명령 등</p> <p>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p> <p>차. 등록취소</p> <p>카. 청문</p> <p>타. 등록증 등의 갱신</p> <p>파. 과징금 처분</p> <p>하. 과태료 부과·징수</p>	<p>약사법 제44조의2</p> <p>같은 법 제44조의2</p> <p>같은 법 제69조</p> <p>같은 법 제69조의4</p> <p>같은 법 제70조</p> <p>같은 법 제71조</p> <p>같은 법 제72조</p> <p>같은 법 제74조</p> <p>같은 법 제76조</p> <p>같은 법 제76조의3</p> <p>같은 법 제77조</p> <p>같은 법 제80조</p> <p>같은 법 제81조</p> <p>같은 법 제98조</p>	
	12	<p>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허가 및 변경허가 등</p> <p>나.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격업소</p>	<p>약사법 제45조</p> <p>같은법 제47조 및 의약품</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지정 및 사후관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허가증 등의 갱신 타. 과징금 처분 파. 지위 승계 등 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8조	
	13	의료기기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차.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 같은 법 제56조	
	1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1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16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17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다. 지도감독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규칙 제11조	
	1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기관의료 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마.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바. 업무개시 명령 사.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아. 시정명령 등 자. 개설 허가 취소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의료지도원 임명 타. 청문 실시 파. 과태료 (부과·징수) 하.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거.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19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휴·폐업신고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라. 시정명령 등 마. 청문실시 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20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의 대마초 재배에 대한 허가·변경 허가 등 나. 출입·검사와 수거 다. 폐기 명령 등 라. 업무 보고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바. 청문 사. 과징금처분 아. 과태료 (부과·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21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체의 해부에 필요한 사항 나. 시체해부 명령 다. 이상 발견 시의 조치 라. 과태료 (부과·징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취소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바.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아.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자. 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차. 구급차 운행연한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타. 구급차등의 지도·감독 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하. 청문 거. 과징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1조의 3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3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47조의 2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2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 운영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 등 다. 검사결과의 통지 등 라.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지도감독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3조의 2 같은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4조 같은 규칙 제16조	
	2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라. 검사결과의 등록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4조의 2 같은 규칙 제7조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26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등 나. 폐기 명령 등 다.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4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건소와 출장소의 재위임 사무 정비

2. 주요내용

- 보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정비
- 위임하지 않는 사무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재위임 사무 및 근거법령정비

2. 주요내용

- 재위임 사무 및 근거법령정비(보건소, 검단출장소)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정비
- 위임하지 않는 사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고
위생과	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	
	2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의료법 제33조	
	3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다.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라. 마약류 양도의 승인 마.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마약류 도매업 제외) 바.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아. 허가 등의 제한 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차. 출입, 검사 및 수거 카. 폐기명령 등 타. 업무보고 등 파.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거.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 더. 마약의 도매보고 러. 마약의 소매보고 머.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버. 청문 서. 과징금 처분 어. 과태료 부과·징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4	<p>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역학조사</p> <p>나. 건강진단</p> <p>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등</p> <p>라. 감염병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등</p> <p>마. 감염병 관리 시설 평가</p> <p>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p> <p>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p> <p>아. 감염병 환자등의 입원 통지</p> <p>자. 감염병유행에 대한 방역조치</p> <p>차. 감염병의 예방 조치</p>	<p>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8조</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39조의 2</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7조</p> <p>같은 법 제49조</p>	
5	<p>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p> <p>나. 예방접종의 공고</p> <p>다.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p> <p>라. 예방접종증명서 교부</p> <p>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p>	<p>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24조, 제25조</p> <p>같은 법 제26조</p> <p>같은 법 제26조의 2</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6	<p>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p> <p>나. 영업의 휴업, 폐업, 폐업신고</p> <p>다.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p> <p>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p> <p>마. 소독업무의 대행명령</p> <p>바. 소독실적 보고</p>	<p>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52조</p> <p>같은 법 제53조</p> <p>같은 법 제59조</p> <p>같은 법 제58조</p> <p>같은 법 제56조</p> <p>같은 법 제57조</p>	
7	<p>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감염자의 치료권고</p> <p>나. 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조치등</p>	<p>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5조</p>	
8	<p>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임신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p> <p>나. 산후조리업 신고</p>	<p>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p> <p>제13조</p> <p>같은 법 제15조</p>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 설 과	1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4조	
노인장애인 복지과	1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제 에너지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규모 도정업에 관한 권한제외)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나. 청문 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양곡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농지법시행령 제39조	
	2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중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협의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44조	
	3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38조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권한		
기업지원과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나.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다.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라.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마.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바.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사. 정기검사 아. 수시검사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카.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타. 조사 파. 계량기 표시의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2조제1항 - 같은 법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 설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2개구이상 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나.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다. 접도구역관리 라. 도로부지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마.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바. 도로점용지의 원상복구 면제승인 사.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아.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 에 한함) 자. 도로환경정비 차.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 도로법 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제66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50조 - 도로법 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2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한 시설물자의 사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3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중 차도·보도· 측도·배수로·길도랑 유지관리 나. 사도개설허가 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도로, 비포장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 도로법 제31조 - 사도법 제4조 - 도로법 제50조	
	4	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가. 폭 20M미만 도로의 하수도유지 및 공사관련 사항 나. 연면적 1,000㎡이하 건축허가에 따 른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물의 사 용 및 유지와 공사에 관련한 사항	-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5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나. 공공하수도의 감독	- 하수도법 제20조 - 같은 법 제37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5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975명 ⇒ 999명 (증 24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 반 직 : 971명 ⇒ 995명 (증 24명)
 - 6급이하 : 904명 ⇒ 928명 (증 24명)
- ※ 추가소요 인건비 : 736,680천원 (내역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975명 ⇒ 999명 (증 24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 반 직 : 971명 ⇒ 995명 (증 24명)
 - 6급이하 : 904명 ⇒ 928명 (증 24명)
- ※ 추가소요 인건비 : 736,680천원 (내역 별첨)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별지 비용추계서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975” 를 “999”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56” 을 “980”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u>999</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995</u>	-				
2급	1	1				
4급	6	4	1	1		
5급	60	30	2	6	1	21
6급 이하 계	<u>928</u>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2	-				
5급 상당	-	-				
6급 상당 이하 계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u>975</u>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956</u>명</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999</u>----- -----.</p> <p>1. -----: <u>980</u>---</p> <p>2. 현행과 같음</p>

[붙임 2]

비용소요 추계서

(단위 : 원, 명, 월)

구분	소요비용	산출근거					비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총계	736,680,500							
1. 인건비	631,731,140							
가. 기본급	491,772,000	○ 4급(연봉제)	80,411,000					
		○ 5급(연봉제)	51,684,000					
		○ 6급(24호봉)	3,610,900	1		12	43,330,800	
		○ 7급(14호봉)	2,741,900	1		12	32,902,800	
		○ 8급(8호봉)	2,122,300	1		12	25,467,600	
		○ 9급(3호봉)	1,547,900	21		12	390,070,800	
							0	
나. 상여금	30,325,940	○ 정근수당	491,772,000	24	0.08	2	30,325,940	90%평균
다. 정액수당	109,633,200							
1)가족수당	7,296,000	○ 배우자	40,000	10	0.78	12	3,744,000	
		○ 존비속	20,000	10	1.48	12	3,552,000	
2)정근수당가산금	15,720,000	○ 25년 이상	130,000	0		12	0	
		○ 20년~25년미만	110,000	1		12	1,320,000	
		○ 15년~20년미만	80,000	1		12	960,000	
		○ 10년~15년미만	60,000	2		12	1,440,000	
		○ 5년~10년미만	50,000	20		12	12,000,000	
3)정액급식비	37,440,000	○ 일반직	130,000	24		12	37,440,000	
4)명절휴가비	49,177,200	○ 명절휴가	491,772,000		0.05	2	49,177,200	
2. 직무수행경비	31,260,000							
가. 직책업무추진비	0	○ 4급	350,000			12	0	
		○ 5급	100,000			12	0	
나. 직급보조비	31,260,000	○ 4급	400,000			12	0	
		○ 5급	250,000			12	0	
		○ 6급	155,000	1		12	1,860,000	
		○ 7급	140,000	1		12	1,680,000	
		○ 8급	105,000	1		12	1,260,000	
		○ 9급	105,000	21		12	26,460,000	
3. 포상금	73,689,360							
가. 성과상여금	73,689,360	○ 5급~9급	3,070,390	24		1	73,689,360	

주1) 소요비용 계 중 상여금,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등은 1인 단가가 아님에 유의

2) 산출근거별 단가는 매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됨

3)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5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별표 1)
 - 총 정원 : 975명 ⇒ 999명 (증 24명)
 - 일반직 : 971명 ⇒ 995명 (증 24명)
 - 5급 : 60명 ⇒ 60명
 - 6급 : 230명 ⇒ 231명 (증 1명)
 - 7급 : 318명 ⇒ 322명 (증 4명)
 - 8급 : 262명 ⇒ 260명 (감 2명)
 - 9급 : 94명 ⇒ 115명 (증 21명)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별표 1)
 - 총 정원 : 975명 ⇒ 999명 (증 24명)
 - 일반직 : 971명 ⇒ 995명 (증 24명)
 - 5급 : 60명 ⇒ 60명
 - 6급 : 230명 ⇒ 231명 (증 1명)
 - 7급 : 318명 ⇒ 322명 (증 4명)
 - 8급 : 262명 ⇒ 260명 (감 2명)
 - 9급 : 94명 ⇒ 115명 (증 21명)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별지 비용추계서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999	632	19	48	16	30	254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995	628	19	48	16	30	254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6	4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5급 소계		60	30	2	4	2	1	21	
행 정		14	12	2					
의 무		3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7	7						
행정·사회복지·공업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3						3	
행정·사회복지·환경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정 · 공업 · 농업		3	1					2	
행정 · 녹지 · 보건		1						1	
행정 · 녹지 · 시설		2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의무 · 보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2			2				
6급 소계		231	159	6	13	4	6	43	
행 정		86	64	4			1	17	
세 무		6	6						
전 산		1	1						
사 회 복 지		7	7						
속 기		1		1					
공 업		6	6						
농 업		1	1						
녹 지		4	4						
수 의		1	1						
보 건		4	3		1				
의 료 기 술		2			2				
간 호		4			3	1			
환 경		6	6						
시 설		18	16				2		
방 송 통 신		1	1						
운 전		5	3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12	9					3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 정 · 사 회 복 지	28	7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2						1	1	
행 정 · 보 건	3	2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10	10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녹 지 · 시 설	1	1							
간 호 · 의 료 기 술	3				2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2	2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4				3	1			
행 정 ·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1					1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 약 무	1				1				
7급 소계	322	215	5	15	6	14	67	(1)	
행 정	112	66	3			2	41	(1)	
세 무	30	30							
전 산	4	4							
사 회 복 지	28	22					6		
속 기	1		1						
공 업	11	9				2			
농 업	2	1				1			
녹 지	6	6							
해 양 수 산	1	1							
보 건	17	11			4	1	1		
의 료 기 술	4				3	1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간	호	6			5	1			
환	경	11	11						
시	설	45	40				5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3	3						
운	전	17	2		1		1	13	
전	화 상 담 운 영	1	1						
기	계 운 영	2	2						
사	무 운 영	8	1	1			2	4	
행	정 · 사 회 복 지	6	3					3	
보	건 · 간 호	1			1				
수	의 · 농 업	1	1						
의	료 기 술 · 식 품 위 생	2			1	1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2				2			
8급 소계		260	163	4	14	3	9	67	(5)
행	정	113	69	3	1			40	(5)
세	무	11	11						
전	산	3	3						
사	회 복 지	36	16					20	
공	업	5	5						
농	업	1	1						
녹	지	6	6						
보	건	9	5		2		2		
의	료 기 술	1				1			
간	호	5			4	1			
환	경	12	12						
시	설	30	24				6		
방	송 통 신	3	3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운	전	7	1	1	1			4	
전	화 상 담 운 영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3	2		1				
전	산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3	1					2	
행	정 · 농 업	1						1	
보	건 · 공 업	1	1						
보	건 · 간 호	1			1				
의	료 기술 · 식 품 위 생	1				1			
환	경 · 공 업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식 품 위 생	3			3				
보	건 · 간 호 · 의 료 기 술	1			1				
9급 소계		115	56	1	1	1		56	(3)
행	정	47	21	1				25	(3)
세	무	4	4						
사	회 복 지	49	17		1			31	
공	업	2	2						
녹	지	2	2						
보	건	1				1			
환	경	3	3						
시	설	4	4						
방	재 안 전	1	1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환 경	1	1						
연 구 직 계		1	1						
기 록 연 구 사		1	1						
별 정 직 계		2	2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6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50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7년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 총 9개소
 - 청라1동 주민센터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 청라3동 주민센터 ⇒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2동 주민센터 ⇒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3동 주민센터 ⇒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 석남2동 주민센터 ⇒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 석남3동 주민센터 ⇒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 가좌2동 주민센터 ⇒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 가좌3동 주민센터 ⇒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 가좌4동 주민센터 ⇒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7년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 총 9개소

- 청라1동 주민센터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 청라3동 주민센터 ⇒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2동 주민센터 ⇒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3동 주민센터 ⇒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 석남2동 주민센터 ⇒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 석남3동 주민센터 ⇒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 가좌2동 주민센터 ⇒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 가좌3동 주민센터 ⇒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 가좌4동 주민센터 ⇒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희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경서동)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가정동)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마전동)	
검단 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블로동)	
검단 3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검단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검단 5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5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무 조정에 따른 부서별 사무정비

2. 주요내용

- 사무조정
 - 노동대책회의 운영(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관련업무 :
기업지원과 ⇒ 일자리지원과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사무 조정에 따른 부서별 사무정비

2. 주요내용

- 사무조정
 - 노동대책회의 운영(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관련업무 :
기업지원과 ⇒ 일자리지원과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2017-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업지원과와 일자리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청사무분장표(제7조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업 지원과	1.	노동행정의 계획 수립 시행
	2.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
	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4.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5.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공장 신·증설 및 이전승인
		나.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
		다.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사무
		라. 입지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마. 공장 휴·폐업 신고 및 공장등록증명 발급
		바. 불법 공장 단속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8.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선정추진	
9.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설치운영	
10.	지식재산기반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1.	중소기업창업 관련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무	
12.	민속공예산업 육성계획수립 시행	

13.	공예품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14.	품질경영 촉진에 관한 사무
15.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
16.	해외 판로개척 계획 수립
	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무
	나. 해외박람회 참가에 관한 사무
	다. 해외 지사화 사업에 관한 사무
17.	계량기에 관한 사무
18.	계량증명업등록에 관한 사무
19.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무
20.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1.	광공업에 관한 사무
22.	공업지역 진흥 관련 사무
23.	구조고도화 사무
24.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무
25.	혁신산업단지 사무
26.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구본청사무분장표 (제7조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일자리 지원과	1.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2.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3.	직업안내 사업자와 업무보조원의 교양 및 훈련
	4.	직업소개소 신고 등
	5.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나. 취업교육관 및 채용관 상설 운영
		다. 취업 상담 및 알선
		라.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6.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가. 연도별 지역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나. 지역일자리 실적 및 평가 관리
	7.	고용복지+센터 운영
	8.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	공공근로자모집및관리
	10.	실직자구제시책개발
	11.	기타 실업관련 민원처리 상담
	12.	골드세대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13.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정책 시행
14.	지역형(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15.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생산품또는서비스우선구매촉진	
16.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가.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나. 청년인턴 사업 추진	
	다.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1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8.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19.	협동조합 관련 업무	

	20.	생활임금 관련 업무
	21.	지역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22.	마을공동체사업(마을기업,희망마을,공동체정원) 발굴 및 추진
	23.	공동체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연계추진
	24.	노동대책회의 운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